

'99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 주요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7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8조(지방채 발행) ①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의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 2(지방채 발행대상등) ① 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
2.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상환이 가능한 사업
- 3~4항 생략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자치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체권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얻는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예산외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⑤항 생략

2. 검토의견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은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보건소를 이전 건축함에 따라 신축 공사비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을 연리 3%, 2년거치 10년균 분상환조건으로 6억원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하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별 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건축비에 대하여는 의결시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됨.